

#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4년 10월 10일

나. 제출자: 구미시장

다. 회부일자: 2024년 10월 10일

라. 상정일자: 2024년 10월 17일

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경제국장 김 영 철

#### 나. 제안이유

-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을 비영리단체,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결하여 사회공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련 지역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운영의 질적 향상 제고
- 사업의 기획·운영 및 수행에 필요한 지역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고용·노동·경영 등의 민간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시간 및 비용 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

## 다.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

(나) 추진근거

- (1)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 (3)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5조, 제14조
- (4)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다) 위탁사무

- (1) 참여기관 및 참여자 모집
- (2) 참여자 선정·사전교육, 참여자 이력·통계 관리
- (3) 참여자 참여수당·활동실비 지급
- (4) 참여기관과 참여자 연계 매칭 및 활동내역 관리
- (5) 그 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활동 전반

(라) 위탁기간 : 2025. 협약체결일 ~ 2025. 12. 31.

(마) 소요예산 : 244백만원 \* 2024년 기준 산정

(바) 위탁조건

- (1)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단,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기관은 제외)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에서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행정기관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지원단체 등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에 등록 또는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단체(비영리법인·단체가 아닌 경우 제외)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2) 최근 1년 이내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기관으로,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하며 특정 정당·종교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하는 기관

(사)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 2024년 제3차 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아)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의

(1) 선정방법 : 서류심사(1차) 후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2차)

(2) 평가내용 : 사업계획, 사업수행능력, 전문성 종합 심사

구 분	평가항목(안)
사업수행기관 전문성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단체현황(설립목적, 사업목표 등)</li> <li>■ 최근 3년간 취업·일자리 창출 등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li> <li>■ 운영인력의 역량 및 전문성(관련분야 경력자 등 적정 인력 구성)</li> </ul>
사업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목표·비전·세부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li> <li>■ 참여자·참여기관의 모집·관리방안의 구체성 및 타당성</li> <li>■ 추진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목표달성 가능성</li> <li>■ 예산의 타당성 및 집행계획의 효율성</li> </ul>
지역사회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내 일자리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연계 가능성</li> <li>■ 지역경제의 수혜도 및 파급효과</li> </ul>

(자)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라. 참고사항

### ○ 관계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5조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임 기 동

### ○ 본 동의안은

- 경력과 자격을 갖춘 신중년(50세~69세)의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촉진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 ○ 검토 결과,

- 퇴직 전문인력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공헌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선순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관련부서에서는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보유한 적절한 전문기관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 5. 토 론 요 지: 생 략

## 6. 소수의견의 요지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3조(성과평가) 및 구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거 성과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의 '민간위탁제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하나 타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므로 시정하기 바람.
- 사회공헌 및 여성, 청년, 어르신 등 각 부서별로 구분되어 있는 각종 일자리 관련 정책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통합적으로 수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 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